
 방송통신위원회		<h1>보도자료</h1>			
보도 일시	2022. 4. 20.(수) 배포시점	배포 일시	2022. 4. 20.(수) 10:00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고낙준 (02-2110-1530)	
		담당자	사무관	강준성 (02-2110-1514)	

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 대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 거부·기피 시 과태료 상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오늘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이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1.10.19.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료·물건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및 [별표4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하루 평균매출액 : 재제출명령 이행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기준, (직전 3년간 매출액 ÷ 총 일수)를 하루 평균매출액으로 산정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내 범위	
◇ 하루당 부과금액 : 하루 평균매출액 규모(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비율을 차등하여 하루당 부과금액을 산정	<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하루당 부과금액 >	
하루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 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둘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상향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1] 개정)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히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임을 강조하였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끝.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매출액 합산 기간의 일수 [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이하 “하루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p> <p>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p> <p>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p> <p>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p>

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할 때 해당 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 방법·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통지받은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제출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을 확정하여 그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재제출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43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에 법 제51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부과권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과 제출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하루평균매출액별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

하루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하루당 부과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호	350	700	1,0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	350	700	1,000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	700	1,400	2,000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3호	1,500	3,000	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2호의2	700	1,400	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2호의2	350	700	1,000
차.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1호의3	700	1,400	2,000
카.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3호	350	700	1,000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	350	700	1,000
파.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2	350	700	1,000
하.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3	350	700	1,000
거.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4	350	700	1,000
너.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2호	700	1,400	2,000
더.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5	350	700	1,000
러.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4호의6	350	700	1,000
머.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5호	350	700	1,000
버.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	350	700	1,000
서.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6호의2	350	700	1,000
어.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1호	500	1,000	1,500
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제3호	700	1,400	2,000

<p>저.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p> <p>커.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대한 경우</p> <p>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법 제104조제5항제7호</p> <p>법 제104조제2항제1호</p> <p>법 제104조제5항제7호의2</p> <p>법 제104조제1항제4호</p>	<p>350</p> <p>1,000</p> <p>350</p> <p>1,500</p>	<p>700</p> <p>2,000</p> <p>700</p> <p>3,000</p>	<p>1,000</p> <p>3,000</p> <p>1,000</p> <p>5,000</p>
(신설)				
<p>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법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p>	<p>법 제104조제1항제5호</p>	<p>5,000</p>	<p>5,000</p>	<p>5,000</p>
<p>고.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p> <p>노.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도.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p> <p>로.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p>	<p>법 제104조제5항제8호</p> <p>법 제104조제5항제9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0호</p> <p>법 제104조제2항제2호</p>	<p>350</p> <p>350</p> <p>350</p> <p>1,000</p>	<p>700</p> <p>700</p> <p>700</p> <p>2,000</p>	<p>1,000</p> <p>1,000</p> <p>1,000</p> <p>3,000</p>

<p>모.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p> <p>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p> <p>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오.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p> <p>조.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p> <p>초.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p> <p>코.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p> <p>토.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p> <p>포.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p> <p>호.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p> <p>누.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p>	<p>법 제104조제2항제3호</p> <p>법 제104조제2항제4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1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2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3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4호</p> <p>법 제104조제2항제5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5호</p> <p>법 제104조제4항제2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6호</p> <p>법 제104조제5항제17호</p>	<p>1,000</p> <p>350</p> <p>350</p> <p>350</p> <p>350</p> <p>1,000</p> <p>350</p> <p>500</p> <p>350</p> <p>350</p>	<p>2,000</p> <p>2,000</p> <p>700</p> <p>700</p> <p>700</p> <p>2,000</p> <p>700</p> <p>1,000</p> <p>700</p> <p>1,000</p>	<p>3,000</p> <p>3,000</p> <p>1,000</p> <p>1,000</p> <p>1,000</p> <p>3,000</p> <p>1,000</p> <p>1,500</p> <p>1,000</p> <p>1,000</p>
(신설)				
<p>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04조제1항제6호</p>	<p>5,000</p>	<p>5,000</p>	<p>5,000</p>